

제 1429 호
1989. 1. 14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고 건영
편집인 : 공보관 윤두
전화 : 731-6111~3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 735-3337

시 보

차 례

◎ 공문시행	
88년공무원제안심사결과및시상내역	5
◎ 조 례	
제 2390 호 :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8
제 2391 호 :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	9
제 2392 호 : 서울특별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선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 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	10
제 2393 호 : 서울특별시국가유공자및그유족의주택구입에대한시세과세면 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10

(이면지속)

영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2394 호 : 서울특별시 재개발구역 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	11
제 2395 호 : 서울특별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	11
제 2396 호 : 서울특별시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시세 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12
제 2397 호 :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자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	12
제 2398 호 : 서울특별시태양열난방주택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	12
제 2399 호 : 서울특별시철도건설공유지분분할등기에따른등록세과세면제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13
제 2400 호 : 서울특별시태풍등재해로인하여채취특하는부동산등에대한 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13
제 2401 호 : 서울특별시점인계약제도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	13
제 2402 호 : 서울특별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14
제 2403 호 : 서울특별시공공사업수행시대채취특하는부동산에대한취득세 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14
제 2404 호 : 서울특별시한국방송공사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 조례.....	14
제 2405 호 : 서울특별시방송통신·중계소통합에따른시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폐지조례	14
제 2406 호 : 서울특별시국립연극관리공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폐지조례	15
제 2407 호 : 서울특별시한국전매공사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 조례	15
제 2408 호 : 서울특별시국가유공자단체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 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	15
제 2409 호 : 서울특별시올림픽공원및선수촌건설에따른이주대상자의취득 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	15
제 2410 호 : 서울특별시건강성급소유자동차의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폐지조례	16
제 2411 호 : 서울특별시안보통일연구사업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 지조례	16

제 2412 호 : 서울특별시새로제증개장조례 16

㉔ 예 규

제 509 호 : 서울특별시개발사업자금관리운용규칙 21

㉕ 교육규칙

제 329 호 : 서울특별시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중개정규칙 28

㉖ 고 시

제 2 호 : 민영주택건설제치승인 29

제 3 호 : 민영주택건설제치승인 29

제 6 호 : 임대주택 (미혼여성근로자) 건설계획승인 29

제 14 호 : 풍천병태방을위한방전단속 30

제 15 호 : 가축질전사업실시 30

㉗ 공 고

제 1 호 : 도시계획사업 (평일근린공원소유동장조성) 시행공람 31

제 2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공람 32

제 3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공람 32

제 12 호 : 제 2 중전기공사업면허취소 33

제 14 호 : 비료생산업품목추가허가및변경허가 34

제 15 호 : 비료생산업품목추가허가및변경허가 36

제 16 호 : 제 2 중전기공사업면허실효처분 38

제 17 호 : 제 2 중전기공사업행정처분 38

제 20 호 : 제 2 중전기공사업행정처분 38

제 21 호 : 공공하수도사용개시공고 39

제 22 호 : 공공하수도사용개시공고 39

㉘ 구 고 시

제 2 호 : 민영주택사업계획승인 40

제 3 호 : 도시계획사업 (주차장) 시행변경 40

제 6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41

제 7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41

제 8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42

제 358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42

제 374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43
제 378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43

◎ 구 공 고

제 88-2 호 : 판인폐기공고	44
제 4 호 :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허가	44
제 4 호 :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기준에관한세부지침	45
제 98-78 호 : 주택자재생산업소등록취소	47
제 184 호 : 역촌구역 (2 차) 주택개량제개발사업	47

◎ 사 업 소 고 시

제 1 호 : 하천계속집용허가	48
제 2 호 : 하천계속집용허가	48

◎ 사 업 소 공 고

제 1 호 : 퇴계관제공무원직인등록및퇴기	49
------------------------------	----

◎ 사 령

공 문 시 행

“ 뜻도아 하나로, 힘도아 세제로 ”

(관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시경 01226-13

(731-6151)

1989. 1. 9.

수 신 : 수신처참조

제 목 : '88년도 공무원제안 심사결과 및 시상내역

1. '88년도 공무원제안 심사결과 및 시상내역을 별첨과 같이 시
달하니 각급 기관장은 소속공무원에 적극 권장하여 시정발전 착상제도 운
영에 많은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것.

첨 부 : '88년도 공무원제안 심사결과 및 시상내역

서 울 특 별 시 장

(시경 개발담당관 전결)

수신처 : 서파 1-71, 서사 1-57, 서구 1-22, 서보 1-22

'88 제안심사결과및시상

1. 제안채택현황

- 접수 : 143 건
- 채택 : 9 건 11 명
 - 동 상 : 1 건 1 명
 - 장려상 : 4 건 5 명 (공동제안 1 건)
 - 노력상 : 4 건 5 명 (공동제안 1 건)
- 불채택 : 134 건
- * 채택 제안내용

채택등급	제 안 내 용	시행기관
동 상	<p>제 목 : 하수처리장 가스탱크 구조변경 시공 (직무)</p> <p>개선안 :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활용하기 위한 저장탱크를 반지하식으로 설치 (지하 5.8 m 부터 설치)되어 있는것을 지상식으로 설계 변경</p> <p>효 과 : 공사기간 단축 (7 월→1 월) 및 공사비 11억원단축</p> <p>제안자 : 도로과 지방토목기사보 장남주</p>	하수과
장려상	<p>제 목 : 보조기층에 보조재대신 기층재로 대체시공 (직무)</p> <p>개선안 : 아스팔트 도로공사시 공사장의 위치에 따라 보조 기층재 보다 상급재인 기층재가적이 저렴할 수 있으므로 이때 기층재를 보조기층용도로 대체시공</p> <p>효 과 : 예산절감 (87년도 1억8 천만원) 및 아스팔트 포장 품질향상에 기여</p> <p>제안자 : 기술심사담당관실 지방토목기사 유길상</p>	도로과
장려상	<p>제 목 : 하수처리장 시설 개선</p> <p>개선안 : 중량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을 증가시켜 방류수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수처리장의 침전지 월류에어 물 FRP로 9cm 상승시켜 하수처리량을 증가 처리함으로써 수질향상에 기여</p> <p>효 과 : 방류수질 향상 및 22만여의 하수를 추가처리 할수 있어 시설증설에 대비 예산절감</p> <p>제안자 : 중량하수처리장 지방전기기사 배현주</p>	하수과

채택등급	제안 내용	시행기관
장려상	<p>제 목 : 서울대공원 해양관 해수 정수시설 보완(작무)</p> <p>개선안 : 돌고래사육장의 해수여과기인 A-1 여과기의 문제점 (역세척시 1일 40톤의 해수를 버림)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래여과기로 교체하고 칩전조를 설치하여 역세척수 2/3 이상을 재활용</p> <p>효 과 : 역세척수 2/3 이상 재활용으로 예산절감(년간 71백만원) 및 수질향상</p> <p>제안자 :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지방기계과 한상래 운수 2 과 지방기계기사보 유종원</p>	공원과
장려상	<p>제 목 : 보존문서 사본 송부방법 개선</p> <p>개선안 : 청도군의 서울시 문서고(열구, 준영구 문서보관) 보존문서 사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되어 10일이상 소요되던 것을 문서고에 팩시밀리를 설치하여 기존 시 구행시밀리망과 연결 신청즉시 복사전송 발급</p> <p>효 과 : 보존문서 사본 신속처리도 민원발원 해소</p> <p>제안자 : 시인과 지방행정주사보 이상태</p>	시민과
노력상	<p>제 목 : 다중이용 공공시설물 장애자 편의시설 설치</p> <p>개선안 : 신축되는 다중이용 공공시설물(구·동사무소 등)의 계획시 각종 장애자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하고 설치실사시 이행여부 심사 - 기존 공공시설물도 이동빈도가 많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설치</p> <p>효 과 : 특수 소외계층에 대한 행정 서비스 제고</p> <p>제안자 : 종합민원실 지방건축기사 황용연</p>	사회과
노력상	<p>제 목 : 자동차 정비명령 이행결과 개선(직무제안)</p> <p>개선안 : 매년, 불법정비등으로 정비명령을 받은 차량의 정비후 전사를 받아 검사관증을 직발구청에 개별 제출하던것을 검사소에서 행정관청에 일괄보고토록 개선</p> <p>효 과 : 시민불편 요인 제거 및 행정처리능력 제고</p> <p>제안자 : 운수 2 과 기계과 김대환 가 스 과 기계기사보 김재웅</p>	운수 2 과

채택등급	제안내용	시행기관
노력상	<p>제 목 : 통합공과금 고지서에 요금 사용기간 명시</p> <p>개선안 : 각종 통합공과금은 고지일로부터 30 ~ 60 일 이전에 사용한 요금으로서 사용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요금시 시비등 민원불편이 있어 고지서 영수증의 상단여백에 사용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교부함으로써 요금시비등 민원불편 해소</p> <p>효 과 : 사용자간 요금계산 불편해소와 시정신뢰성 증진</p> <p>제안자 : 용산구 추암동 지방행정주사보 박행목</p>	세정과
노력상	<p>제 목 : 시금고 납입필 통지서 수령절차 개선</p> <p>개선안 : 매월 수납된 납입필통지서를 각구청 현제 담당이 시금고에서 수령하던 것을 시금고의 승무직원들 이용 각구청 파출수납점까지 운반하여 담당자에게 교부</p> <p>효 과 : 구직원의 시간과 경비 절감</p> <p>제안자 : 세구지도과 지방행정주사보 김인수</p>	세무지도과

2.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
- 인사상 특전 (제안규정 제 25 조 2 항, 서울특별시 공무원제안규칙 제 23 조, 제 24 조)
 - 동 상 : 7 급이하~특별승진 (1명)
 - 장려상 : 특별승급 (4 건 5명)
 - 노력상 : 특별승급 (4 건 5명)
 - 부상 (제안규칙 제 25 조)
 - 동 상 : 1 건당 150 만원
 - 장려상 : 1 건당 50 만원
 - 노력상 : 1 건당 30 만원
 - * 공동제안은 1건으로 지급
 - 표창 : 수상자 전원 (동상 1명, 장려상 5명, 노력상 5명) 시장표창

조 례

◎서울특별시조례제 2390 호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에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주택건설과 택지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 7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과세면제) ①공사가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공사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공사에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제 3 조 (사무처리의 위임)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과세면제 사무는 당해 과세대상의 노획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 4 조 (면제신청) ①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5 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9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조례제 2391 호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 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제 2 호 및 제 3 호중 "10 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및 집단주택 (다세대주택을 포함한다)"을 각각 "10 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및 5 세대 이상의 다세대주택"으로 한다.

조례 제 1635 호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부칙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9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조례제 2392 호

서울특별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제1항중 “국가유공자 자활촌”을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으로 하고, 제2조 제1항중 “동자활촌내”로 “동자활용사촌내”로 한다.

제2조제2항중 “5급이상 복합호수자는 하지계통호수(분류번호 30,32,37,40,47,49,50,53,54,59,60,65,67,70호)와 복합된 경우에 한한다”를 “5급이상 복합호수자는 하지계통호수(분류번호 30,32,36,37,40,44,47,49,50,53,54,59,60,67,70호)와 복합된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조례 제 886 호 서울특별시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9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조례제 2393 호

서울특별시국가유공자및그유족의주택구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택구입에 대한 시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취득가액이 대부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를 “취득가액이 대부금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상이군경 및 그 유족이 동 자활용사촌내에서 취득 및 등기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로 한다.

조례제 1236 호 서울특별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택구입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9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서울특별시조례제 2394 호</p> <p>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p> <p>서울특별시 재개발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 제2호중 “사업시행당시”를 “사업시행인가당시”로 한다.</p> <p>조례 1303호 서울특별시 재개발지역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9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서울특별시조례제 2395 호</p> <p>서울특별시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p> <p>서울특별시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시세과세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조례 제 1235호 서울특별시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9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	--

◎서울특별시조례 제 2396 호

서울특별시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중고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 2315 호 서울특별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부칙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9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 2397 호

서울특별시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제 1639 호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부칙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9년 12월 31 까지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2398 호

서울특별시태양열난방주택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태양열 난방주택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 1880 호 서울특별시 태양열 난방주택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부칙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9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2399 호

서울특별시철도건설공유지분분할등기에 따른 등록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철도건설공유지분 분할등기에 따른 등록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 2245 호 서울특별시 철도건설공유지분 분할등기에 따른 등록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부칙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②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9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2400 호

서울특별시 태풍등 재해로 인하여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태풍등 재해로 인하여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 2226 호 서울특별시 태풍등 재해로 인하여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부칙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9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2401 호

서울특별시검인계약서제도에 따른 시세물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검인계약서제도에 따른 시세물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 2383 호 서울특별시 검인계약서제도에 따른 시세물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부칙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9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p>◎서울특별시조례 제 2402 호</p> <p>서울특별시주차장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p> <p>서울특별시 주차장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 2331 호 서울특별시 주차장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부칙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②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9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p> <p>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②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9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p> <p>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서울특별시조례 제 2404 호</p> <p>서울특별시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지조례</p> <p>서울특별시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백을 폐지한다.</p> <p>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서울특별시조례 제 2403 호</p> <p>서울특별시공공사업수행시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p> <p>서울특별시공공사업수행시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조례 제 2247 호 서울특별시 공공사업수행시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부칙 제</p>	<p>◎서울특별시조례 제 2405 호</p> <p>서울특별시방송중선·중계소 통합에 따른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p> <p>서울특별시방송중선·중계소 통합에 따른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백을 폐지한다.</p>

<p>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서울특별시조례 제 2406 호</p> <p>서울특별시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p>	<p>서울특별시국가유공자단체 등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p> <p>서울특별시 국가유공자단체 등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p>
<p>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서울특별시조례 제 2407 호</p> <p>서울특별시한국전매공사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p>	<p>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서울특별시조례 제 2409 호</p> <p>서울특별시올림픽공원 및 올림픽선수촌동 건설에 따른 이주대상자의 취득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p>
<p>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서울특별시조례 제 2408 호</p> <p>서울특별시 한국전매공사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p>	<p>서울특별시 올림픽공원 및 올림픽선수촌동 건설에 따른 이주 대상자의 취득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p>
<p>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서울특별시조례 제 2408 호</p>	<p>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서울특별시조례 제 2410 호

서울특별시군장성급소유자동차의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폐지조례 -

서울특별시군장성급 소유자동차의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2411 호

서울특별시안보통일연구사업등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

서울특별시 안보통일연구 사업등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2412 호

서울특별시세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 제 1 항 제 6 호 및 제 7 호를

각각 제 7 호 및 제 8 호로 하고, 동항에 제 6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담배소비세

제 6 조 제 1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담배소비세는 시정이 직접 부과 징수한다.

제 16 조의 제목과 제 1 항중 "시세심의위원회"를 각각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고, 동조 제 1 항중 "시세에 관한"을 "지방세에 관한"으로 한다.

제 25 조 제 1 항, 제 8 항 및 제 9 항중 "20 일 이내"를 각각 "30 일 이내"로 한다.

제 32 조 제 1 항 제 1 호 제 7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7)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가. 경매신청, 가압류 및 가처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나. 가등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2

제 32 조 제 1 항 제 2 호 제 3 목 및 제 4 목을 각각 제 4 목 및 제 5 목으로

하고, 동호에 제 3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되, 제 4 목(중건의 제 3 목)중

"제 1 목 및 제 2 목"을 "제 1 목 내지 제 3 목"으로 하며, 제 5 목(중

건의 제 4 목)중 "제 1 목 내지 제 3 목"을 "제 1 목 내지 제 4 목"으

로 한다.

(3)선박소유권의 보존: 선박가액의 1,000

<p>분의 0.2 제 35 조를 삭제한다. 제 45 조에 제 4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 1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세액을</p>	<p>일시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제 51 조중 "연 144 만원"을 연 280 만원"으로 한다. 제 5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52 조 (과세표준 및 세율) 농지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은 다음과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과 세 표 준</p> <p>250 만원 이하 250 만원 초과 500 만원 이하 500 만원 초과 800 만원 이하 800 만원 초과 1 천 200 만원 이하 1 천 200 만원 초과 1 천 700 만원 이하 1 천 700 만원 초과 2 천 300 만원 이하 2 천 300 만원 초과 5 천만원 이하 5 천만원 초과</p>	<p style="text-align: center;">세 율</p> <p>각세표준액의 100 분의 5 12 만 5 천원 + 250 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 분의 10 37 만 5 천원 + 500 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 분의 15 82 만 5 천원 + 800 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 분의 20 162 만 5 천원 + 1 천 200 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 분의 25 287 만 5 천원 + 1 천 700 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 분의 30 467 만 5 천원 + 2 천 300 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 분의 40 1 천 547 만 5 천원 + 5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 분의 50</p>
<p>제 2 장제 6 절 (제 61 조 내지 제 69 조) 및 제 7 절 (제 70 조 내지 제 77 조)을 각각 제 7 절 및 제 8 절로 한다. 제 2 장에 제 6 장 (제 60 조의 2 내지 제 60 조의 1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 6 절 담배소비세 제 60 조의 2 (과세대상) 1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제조담배로 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1. 흡연용의 제조담배
 가. 제 1종 쥘련
 나. 제 2종 파이프담배
 다. 제 3종 엽쥘련
 라. 제 4종 각련

2. 씹는 제조담배

3. 냄새맡는 제조담배

제 60조의 3 (납세의무자) ①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 발송품으로 제조담배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 반입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제 1항 내지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제조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그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 60조의 4 (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제조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한다.

제 60조의 5 (세율) ①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흡연용의 제조담배
 가. 제 1종 쥘련 20개비당 360원. 다만, 판매가격이 20개비당 200원이하인 쥘련은 20개비당 40원
 나. 제 2종 파이프담배 500그램당 700원
 다. 제 3종 엽쥘련 50그램당 2,000원
 라. 제 4종 각련 50그램당 700원

2. 씹는 제조담배 50그램당 800원

3. 냄새맡는 제조담배 50그램당 500원

②제조담배로서 판매가격이 다음 각호의 금액이하의 제조담배인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로 한다.

1. 쥘련 : 20개비당 100원
 2. 각련 : 50그램당 100원

제 60조의 6 (제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 23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반출, 미납세 및 과세면제 대상반출을 구분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 2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의 미남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 232 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성명 또는 명칭
- 2. 미남세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제 60 조의 7 (개업신고) 시내에 주 사무소 소재지 (제조장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장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1.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 2. 대표자 및 관리자 (제조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주소
- 3. 생산 또는 수입하는 제조담배의 품종 및 주생산 제조담배의 품종
- 4. 1일평균 생산능력 또는 1일평균 수입량
- 5. 영연개시일자
- 6. 제조담배 보관창고의 주소 및 위치도면

7.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8.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또는 등록증 사본

제 60 조의 8 (휴·폐업신고) 제 60 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1.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 2. 대표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
- 3.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자
- 4. 재고담배의 사용 계획서
- 5. 휴업 또는 폐업의 사유

제 60 조의 9 (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 60 조의 10 (신고납부등) ①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제 60 조의 4 및 제 60 조의 5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따라 산출한 세액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시내에서 영업장을 둔

소매인에게 매도된 제조담배 (수입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비례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시내에 주사무소를 둔 수입관대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영 제1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입 제조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각 시·군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③시장은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지난달 1일부터 말일까지 각 시·군별로 소매인에게 매도된 제조담배 (수입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비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각 시·군에 납입하여야 하며, 시장이 징수하는 담배소비세의 특별징수분은 일반회계수입금출납원이 별도 구좌를 개설하여 이를 관리한다.

④제 60조의 3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제조담배의 품종·수량·세율·세액등을 기재한 납부서와 함께 산출된 담배소비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 60조의 11 (가산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

출세액 또는 부록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 60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영업신고서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2. 제 60조의 8의 규정에 의한 휴·폐업신고서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 60조의 9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4. 제 60조의 10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다만,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 60조의 10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회의로 신고납부한 경우. 다만,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록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법 제 231 조 및 제 23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제조담배를 당해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배도·판버·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자가 제 60 조의 6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담배를 반출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 232 조의 9 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4. 과세표준액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5. 제 1 항 및 제 2 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당해 행위에 의한 제조담배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 60 조의 12 (납세담보) ①시장은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자에게 그가 전 6 월간 납부한 세액의 3분의 1 이상 (최소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2 월분 예상관출액에 대한 세액) 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제공을 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

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시장은 제조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물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령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예 규

◎서울특별시예규제 509 호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기금관리 운용규정

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 기금관리 운용규정을 제정 공포한다.

1988.12.27

서울특별시장 고 건

제 1 장 목 적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도시재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사업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재개발사업 기금을(이하 "기금"이라 한다) 관리·운용함에 있어 수입, 지출, 자금관리, 자금운용, 보고 및 결산 등에

<p>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p> <p>제 2 조 (회계적 공무원 지정) 조례 제 8 조 제 1 항에 의거 기금의 출납명령권 및 기금출납 공무원을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p> <p>도시재개발기금 출납 명령권... 도시계획국장</p> <p>도시재개발기금 출납 공무원... 재개발과장</p>	<p>제 5 조 (미수납액의 이월) 기금출납원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써 강해년도에 수납되지 아니한 것은 익년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p> <p>제 6 조 (준용) 본 규정과 정하지 아니한 징수에 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p>
<p>제 2 장 수 입</p>	<p>제 3 장 지 출</p>
<p>제 3 조 (수입) 법 제 6 조 및 조례 제 7 조에 따라 기금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적립금수입 2. 부담금수입 3. 국고보조금 및 국고융자금 수입 대출이자수입 4. 수탁사업 수입 5. 타회계의 전입금 6. 감정수수료 수입 7. 기타수입 	<p>제 7 조 (지출의 제한) 조례 제 7 조 제 2 항에 명시된 아래 지출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개발사업에 따른 보조 및 융자 2.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부담 3. 관련수탁 사업 4. 국고 융자금에 대한 상환 5. 재개발사업을 위한 조사계획 및 행정경비 6. 기금관리 운용에 따른 부대경비 7. 감정 수수료의 지출 8. 기타기금 증식을 위한 투자기술
<p>제 4 조 (징수결정 및 통지) ①기금출납공무원은 수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결의서에 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고 고지서를 발급 통지하여야 한다.</p> <p>②착오,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의 취소, 경정 또는 결손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1 항 규정에 준용하여 처리한다.</p>	<p>제 8 조 (지출방법) ①계약에 의한 자금지출은 구입과 지출결의서에 의하고 일반적인 지출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한다.</p> <p>②지출원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통상 지급명령에 의거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p>제 9 조 (준용규정) 본 규정 이외의 지출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p>

규칙 제 5 장 (지출) 에 준용한다.

제 4 장 기금의 집행

제 10 조 (기금예산의 편성) 도시계획국장
은 예산편성 지침등을 참고하여 기금예
산을 편성후 시장의 결재를 득하여 지
방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11 조 (기금집행공의) 기금집행 공의는
서울특별시 (이하 "시"라한다) 시장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임
전절 규정에 의거 각각 이를 전절할
수 있다.

제 12 조 (집행) 재개발과장은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구분계리하여야 한
다. 각종서식은 서울특별시 재무회
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 13 조 (준용규정) 공사, 물품구매등
계약행위와 모든 집행에 따른 방법
및 절차는 예산회계 원칙에 의하여
예산회계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재
무 회계규칙 서울특별시 회계사무
취급규정을 준용한다.

제 5 장 기금의 보조 및 용자

제 14 조 (보조금지금 범위) 시행령
제 53 조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재개발사업을 위한 연구단체 또
는 공익법인, 행정청
2. 재개발사업을 기초 조사한 시산

하 기관

3. 새개발 지역내에 공공시설을 설
치한 행정청 또는 공익법인, 사인

제 15 조 (보조금의 한도액) ①시행자
가 행정청일 경우 보조금 한도액은
기초조사비 및 공공시설 사업비의
5분의 4 이내

②시행자가 공익법인, 사인일 경우는
기초조사비 및 공공시설사업비의 2
분의 1 이내로 한다.

제 16 조 (보조금의 신청) 보조금을 지
급받고자 하는 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신청서 (제 1호서식)
2. 사업계획서
3. 성과내역서
4. 사업이력세서

제 17 조 (보조금의 교부) 재개발과장
은 접수한날로부터 1개월이내 자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제 18 조 (기금용자대상자) 법 제 60 조
제 2 항에 의한 기금의 용자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 11 조에 의거 재개발사업
을 시행하는 자
2. 법 제 32 조에 의거 인가를 받
은 공사, 법인
3. 토지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립한
재개발조합

제 19 조 (용자형식) 자금의 용자는 증
서대출을 원칙으로 한다.

<p>제 20 조 (대출기간 및 이율) ①기금의 대출 이율 및 상환기간은 시행령 제 5 조 및 조례 제 10 조에 의한다.</p> <p>②시행자가 할부금 또는 이자불연체하였을 경우에는 금융단에서 정한 일반대출 연체이자로 한다.</p> <p>제 21 조 (기금용자계획광고) 년초 용자지원 계획에 의거 시장은 중앙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1 회 이상 기금용자에 대한 아래사항을 광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자격 2. 신청방법 3. 신청서류 4. 용자조건 및 상환방법 5. 기타 유의사항 <p>제 22 조 (우자신청) 용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서 (제 2 호서식) 2. 건축대지증명 및 지적도 3.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 등본 4. 사업계획서 또는 사업계획 승인서 사본 5. 정관 (조합, 단체의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사업비 내역서 7. 기타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p>제 23 조 (용자의 승인) ①용자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 개월 이내 자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자여부와 금액을 확정하여 신청자에 통보 (서식 15-1 호) 하여야 한다.</p> <p>②심의위원회는 신청자의 신용여부, 상환가능여부, 기금의잔고, 기타사업제지서등을 참고하여야 한다.</p> <p>제 24 조 (용자금의 한도액) ①용자신청자에게 용자할수 있는 한도액은 재개발사업비중 건축비의 1/2 이내로 한다.</p> <p>②사업주체가 개인 또는 조합일 경우에는 대지 또는 타담보물의 감경가액의 범위내이어야 한다.</p> <p>제 25 조 (자금용자 결정 취소등) ①시장은 자금용자 대상으로 결정된 후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금용자 결정을 취소할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착공계획일로부터 2 개월 이내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할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조합인가 또는 사업인가를 받았
--	---

거나 자금용자를 받을때

3. 시장이 발하는 명령 또는 지시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을때

②시장은 개인 또는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자금(이자포함)을 일시에 회수할수 있다.

1.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때
2.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때
3. 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승인받은 사업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것이 확실할때
4. 용자금을 재개발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때
5. 시행자의 명목이 변경된때 시장에게 신고된 때는 예외로 한다.

제 6 장 자금운영 심의 위원회

제 26 조 (위원회 구성) ①서울시 도시재개발 기금의 합리적인 운영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 기금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장은 도시계획국장이 되고 위원은 재개발과 과장, 재개발원이 된다.

제 27 조 (위원회 운영) ①주관과장은 아래의 각호사유가 발생할시는 관재증빙서류 첨부하여 심의요구(제3호서식)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본규정 제 17 조, 23 조 해당사항 일때

2. 3,000 만원이상 기금을 집행할때

3. 기타 기금운영에 있어 필요한때
②부의안건의 심의는 재적인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고(서식4호) 해당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고 및 결산

제 28 조 (세입, 세출의 보고) ①주관과장은 기금세입보고서, 세출보고서를 매월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주관과장은 분기별로 세입, 세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주관과장은 년 1 회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도시재개발 기금중 도로굴착부구비및 수탁사업비를 본규정 시행일 이전까지 분리하여야 한다.
3. 현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지출원은 본규정 시행일 이전까지 본규정상의 지출원에게 이관시켜야 한다.

<p>서식 제 1 호</p> <p style="text-align: center;"><u>도시재개발기금보조금신청서</u></p>	
<p>신청자 : 주소 주민등록(사업자등록)번호 성명</p>	<p>원정 W</p>
<p>신청금액 : 금</p>	<p>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 53 조에 의거 도시재개발기금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198</p>	
<p>신청자 인</p>	
<p>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성과내역서 3. 사업비 명세서 서울특별시장 귀하</p>	
<p>제 2 호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u>도시재개발기금융자금신청서</u></p>	
<p>신청자 : 지구명 : 주소 : 조합명 : 대표자 :</p>	<p>원정 W</p>
<p>신청금액 : 금</p>	<p>도시재개발법 제 60 조 제 2 항에 의거 도시재개발 기금 융자금을 신청합니다.</p>
<p>198</p>	
<p>위신청자 인</p>	
<p>첨부서류 1. 건축대지 증명 및 지적도 2.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등본 3. 사업계획서 또는 사업계획 승인서 사본 4. 정관 5. 사업비 내역서 6. 기타 서울특별시장 귀하</p>	

제 2 의 1 호 서 식

도시재개발기금운용자금통보서

주 소 :

성 명 :

19 년 월 일 자 귀하께서 신청하신 도시재개발 기금 운용 자금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기 통보합니다.

가. 운용금액 : 금 원정 W

- 나. 상환기간
- 다. 이 율
- 라. 연체이율
- 마. 담 부 처
- 바. 기 타

198
서 울 특 별 시 장

서 식 제 3 호

도시재개발기금운영에대한심의요구서

건 명 :

위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첨부서류

- 1.
- 2.
- 3.

재 개 발 과 장
도시재개발기금 관리운영 심의위원회 귀하

서석제 4호 심 사 결 정 서		
전 명 : 도시재개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 결정함.		
<u>결 정 내 용</u>		
주	결 의 사 항	비 고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교 육 규 칙 </p> <p style="text-align: center;">(공 포 문)</p> <p>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9. 1. 9.</p> <p>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김 상 준</p> </div> <div style="width: 50%;"> <p style="text-align: right;">198</p> <p> 심의책임관 ㉠ 부 책임관 ㉡ 심 의 관 ㉢ 심 의 관 ㉣ </p> <p> ◎교육규칙제 329호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중 개정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28조 제 3항 제 3호에 다음과 같이 단서규정을 신설한다. “다만,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제외한다.” </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div> </div>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2 호

민영주택건설계획승인

주택건설 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랑구 목동 68 번
지 38 호의 2 필지상에 민영주택건설 사
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 32
조 5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9. 1. . .

서울특별시장

1. 사업명 : 목동연립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경성주택 김 종 덕
3. 사업시행지 및 위치면적 규모
가. 위 치 : 중랑구 목동 68 번지
38 호의 2 필지
나. 대지면적 : 1,174.0 ㎡
다. 규 모 : 연립주택 3 층 1 동
27 세대
4. 사업기간 : 1988.12. ~ 1989.12.

◎서울특별시고시제 3 호

민영주택건설계획승인

주택건설 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613
번지 7 호의 3 필지상에 민영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
32 조 5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9. . .

서울특별시장

1. 사업명 : 민영주택 건설사업 계
획승인
2. 사업주체 : 원당주택유. 박병희 외
1 인
3. 사업시행지 및 위치면적 규모
가. 위 치 : 중랑구 신내동 613 번
지 7 호의 3 필지
나. 대지면적 : 2,467.0 ㎡
다. 규 모 : 아파트 1 동 5 층 50 세대
4. 사업기간 : 1988.12 ~ 1989.12

◎서울특별시고시제 6 호

임대주택 (미혼여성근로자)

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 촉진법 제 33 조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 (미혼여성근로자)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
32 조의 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9. 1. . .

서울특별시장

- 다 음 -

- 가. 사업명 : 임대주택 (미혼여성근로자) 건설사업
- 나. 사업주체 : 한국수출산업공단 대표 김기배
- 다.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규모
 - 1) 위치 : 구로구 가리봉동 494-10 외 8 필지
 - 2) 면적 : 4,824 평방미터
 - 3) 규모 : 아파트 5층 2동 160세대, 부대 복리시설 3층 1동
 - 4) 사업시행기간 : 89.1.-89.9.

◎서울특별시공고제 14호

광견병예방을위한방견단속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견병 예방주사를 마치지 아니한 개가 옥외에서 배회하는 것을 단속하고자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89. 1.

서울특별시장

- 1. 목 적 : 광견병 반연의 미연방지
- 2. 대 상 : 옥외에서 배회하는 개
- 3. 기 역 : 서울특별시 전역

4. 기 간 : '89.1.23 -- 12.31

5. 방 법 : 포박하여 일정한 장소에 억류

6. 기타사항

- 가. 억류된 개는 구청별로 억류상황을 공고합니다.
- 나. 억류된 개를 되돌려 받고자 하는 축주는 억류공고후 2일 이내에 광견병 예방주사 필증을 지참 인수하여야 합니다. (미필개는 예방주사를 필한 후 인수할 수 있음)
- 다. 억류기간중 반환요구가 없는 개에 대하여는 가축방역관의 지시에 의하여 살처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라. 광견병 예방주사를 미필한 방견 축주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2조 제3항에 의하여 고발됩니다.

◎서울특별시고시제 15호

가축검진사업 실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내에 기르고 있는 젖소에 대한 검진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1989. 1.

서울특별시장

1. 목적: 가족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축산업 발전 및 인수공통 전염병 근절에 기여함
2. 지역: 서울특별시
3. 내용: 젖소의 결핵병 및 부루세라병 검진
4. 실시기간: '89.3.1 - 11.30
5. 실시방법: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가축방역관과 공수의에게 위촉 실시
6. 실시대상:
 - 결핵병: 젖소 1세 이상 전두수
 - 부루세라병: 착유하는 젖소
7. 기타사항: 검진결과 양성 및 의심성 젖소가 발생되었을때는 농림수산부 예규 제 132호에 의거 조치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1 호

도시계획사업(명일근린공원 소운동장 조성) 시행에 따른 서류 공람

1. 건설부 고시 제 522 호(88.10.26)로 공원 조성계획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396 호(88.11.7)로 지적승인된 강동구 명일

동 산 49 번지 명일근린 공원 소운동장 조성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서류의 공람 및 의견을 청취코져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27 조의 2 에 의거 14 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관계도시는 강동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본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989년 1월 5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산 49 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 시행명일근린공원 소운동장조성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1) 소운동장 (7,900 ㎡)
- 2) 면 적: 13,632 ㎡

라. 사업시행자: 학교법인 한영학원

마. 사업시행기간: '89.1.~'89.3(예정)

바.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지번, 지목,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지 번	지 목	기 격	소 유 가
강동구 명인동 산 49	임 야	13,632㎡	학교법인 한영학원
<p>◎서울특별시공고제 2 호</p> <p>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 공람</p> <p>1. 서울시고시 제 169(82.4.27) 호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성북동 224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제한 인가코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27 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p> <p>2.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공고로 진음합니다.</p> <p>3.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 건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p> <p>가. 공람장소 : 성북구청토목과, 건설관리과</p> <p>나.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p> <p style="text-align: center;">89. 1. 14</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p> <p>1) 사업시행지 : 성북동 224 번지 2) 사업의종류 및 명칭 : 성북동 224 도로개설</p> <p>3) 사업의규모 : B=8m, L=150m 도로포장</p> <p>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p> <p>5) 사업적수 및 준공예정일 ○착공 : 인가일로부터 30 일 이내 ○준공 : 90.12.30</p> <p>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p> <p>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p> <p>8) 기타사항 :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상기 공람장소에 제출 또는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p> <p>◎서울특별시공고제 3 호</p> <p>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 공람</p> <p>1. 건설부 고시 제 294(78.10.2) 호로 시설결정 서울시고시제 336(80.9.30) 호로 지적승인된 마야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제한 인가코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7 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p>			

2.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명자에 대하여는 이공고로 알음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 건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임한다.
 가. 공람장소: 성북구청토목과·건설관리과
 나.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제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득권리명세: 별첨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권한인주 소.
 성명: 별첨
 8) 기타사항: 의견 및 불응한 사항은 상기 공람장소에 제출하는 분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12호

제 2 종 전기공사업 면허취소

89. 1.
 서울특별시
 1) 사업시행처: 해좌로타리-미아삼거리간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미아로 확장공사
 3) 사업의 규모: 폭 = 35 m, 연길 = 4,000 m 도로확장
 4)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5) 사업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착공: 인가일로부터 30 일 이내
 ○ 준공: 1990. 12. 30
 6) 수용되는 사용할 토지전용의 소

전기 공사업법 제 31 조 제 1 항 및 국제징수법 제 7 조 제 1 항, 2 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제 2 종 전기공사업 면허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을 하였기 전기공사업법 제 42 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1989. 1.

서울특별시

면허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사유
693 호	태창전기공사	권순옥	신대방동 362-41	면허취소	전기공사업법 제 7 조 제 2 항 위반 국제징수법 제 7 조 제 2 항 위반

◎서울특별시공고제 14 호

비료생산업 품목추가허가 및 변경허가

비료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동 제4조 제1항 동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비료생산업 품목추가허가 및 변경허가 하였기 동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89.1.10

서울특별시장

1. 허가번호: 제 1-2 호
2. 허가년월일: 1989년 1월 10일
3. 성명: 손영희
4.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동 1245 반포(아) 95-107호
5. 사업장소재지: 서울 강서구가양동 92번지
6. 상호: 제일계당(주)
7. 비료의 종류 및 품목: 아래와 같음
8. 보증성분 및 기타의 규격: 아래와 같음.
9. 생산능력: 아래와 같음

비료생산업 품목추가허가 내역

비료의 종류 및 품목	보증성분량		기타의 규격 (%)	생산능력 (년간톤)	허가 년월일
	유효성분량(%)	유해성분량(%)			
개 2종 복합비료: 10-6-11 (합계기비용)	질소전량: 10% 가용성인산: 6% 수용성가리: 11 구용성고토: 1 수용성붕소: 0.3	1. 질소, 인산, 가리 각각의 최대주성분량의 합계량에 함유율 1%에 대하여 · 황청산화물: 0.005% · 비소: 0.004 · 아질산: 0.02% · 규렛태질소: 0.01 · 설파민산: 0.005 2. 가용성인산함유율 1%에 대하여	유리황산: 45,000 0.5%이하		'89.1.10

제 1429 호

시

보 1989.1.14 65-35

비료의 종류 및 품목	보 증 성분 량		기타의 규격 (%)	생산능력 (년, 분)	허가 년월일		
	유효성분량(%)	유해성분량(%)					
		· 카드뮴: 0.00018 %					
제2종복합비료 12-5-7 (삼전기비용)	질소전량: 12 % 수용성인산: 5 수용성가리: 7 구용성고토: 1 수용성붕소: 0.3	위 와 같 음	위와같음	45,000	'89.1.10		
제2종복합비료 12-8-10 (조지판리용)	질소전량: 12 % 가용성인산: 8 수용성가리: 10 구용성고토: 1 수용성붕소: 0.2	위 와 같 음	위와같음	45,000	'89.1.10		
제2종복합비료 8-12-12 (코이거비용)	질소전량: 8 % 가용성인산: 12 수용성가리: 12 구용성고토: 1 수용성붕소: 0.3	위 와 같 음	위와같음	45,000	'89.1.10		
비료생산업허가사항변경허가내역							
비료의 종류 및 품목	보 증 성분 량		기타의 규격	생산능력 (년, 분)	허가 년월일	변경 허가 년월일	
	유효성분량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유해성분량			
아미노산발효	아미노산발효	질소전량: 4%	질소전량: 4%	없 음	평균농도: 120,000	'78.1.10	'89.1.10
부산비료(박)	부산비료(박)	가리전량: 1%	인산전량: 1% 가리전량: 1%	10%이하	(변경없음)	23	10
				(변경없음)			

◎서울특별시공고제 15 호

비료생산업품목추가허가및변경허가

비료관리법 제 11조제 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 3조제 5항 동 제 16조제 1항제 1호의 규정에 의거 비료생산업 품목추가허가 하였기 동시행령 제 16조제 1항제 5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89.1.10

서울특별시

1. 허가번호: 제 1-1 호
2. 허가년월일: 1989년 1월 10일
3. 성 명: 김 재 방
4. 주 소: 서울용산구 서빙고동 24-21 신동아(하) 11동 405호
5. 사업장소재지: 서울도봉구 방학동 720번지
6. 상 호: (주) 미 원
7. 비료의종류 및 품목: 아래와 같음
8. 보증성분 및 기타의 규격: 아래와 같음
9. 생산능력: 아래와 같음

비료생산업품목추가허가내역

비료의종류 및 품 목	보 증 성 분 량		기 타 의 규 격 (%)	생산능력 (년가, 톤)	허 가 년 월 일
	유 효성분량(%)	유 해 성 분 량 (%)			
제 2 종 복합 비료 11-13-10 (수도기비용)	질소전량: 11% 가용성인산: 13% 구용성가리: 10% 구용성고토: 2%	1. 질소, 인산, 가리 각각 의 최대추성분량의 합 계량의 함유율 1%에 대하여 · 황산산화물: 0.025% · 비 소: 0.005 % · 아 질 산: 0.02 % · 뷰렛태질소: 0.01 % · 설펜산: 0.005 % 2. 가용성인산 함유율 1%에 대하여 · 카드늄: 0.00018%	유리황산 : 0.5% 이하	48,000	'89.1.10
제 2 종 복합 비료 11-10-10 (사과, 단감, 옥수수기비용)	질소전량: 11% 가용성인산: 10% 구용성가리: 10% 구용성고토: 3% 구용성붕소: 0.3%	위 와 같 음	위와같음	48,000	'89.1.10

비료의 종류 및 품 목	보 증 성 분 량		기 타 의 규 격 (%)	생 산 능 력 (톤/간, 년 월 일)	허 가 년 월 일
	유 효 성 분 량 (%)	유 해 성 분 량 (%)			
제 4 종 복합 비료 8-7-19 (엽면시비용, 수용제)	질소전량: 8% 수용성인산: 7% 수용성가리: 19% 수용성고토: 1% 수용성붕소: 1% 수용성이연: 0.3% 수용성망간: 0.1%	질소, 인산, 가리 각각의 최대수성분량의 합계량 의 함유율 1%에 대 하여 · 황청산화물: 0.005 · 비 소: 0.004 · 아 질 산: 0.02 · 류렛태질소: 0.01 · 설 파 민 산: 0.005	없 음	8,000	'89.1.10
제 4 종 복합 비료 1-25-20 (엽면시비용, 수용제)	질소전량: 1% 수용성인산: 25% 수용성가리: 20% 수용성고토: 3% 수용성붕소: 2% 수용성이연: 0.3% 수용성망간: 0.1%	위 와 같 음	없 음	8,000	'89.1.10
제 4 종 복합 비료 6-4-5 (엽면시비용, 수용제)	질소전량: 6% 수용성인산: 4% 수용성가리: 5% 수용성고토: 1% 수용성붕소: 0.3% 수용성이연: 0.3% 수용성망간: 0.1%	위 와 같 음	없 음	8,000	'89.1.10
혼합유기질 비료 6-2-1	질소전량: 6% 인산전량: 2% 가리전량: 1%	없 음	없 음	48,000	'89.1.10

<p>◎서울특별시공고제 16 호</p> <p>제 2 종 전기공사업면허실효처분</p> <p>전기공사업법 제 30 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제 2 종 전기공사업체에</p>		<p>대하여 면허실효처분 하던가 동법 제 42 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p> <p>1989. 1.</p> <p>서울특별시장</p>				
아		태				
면허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사	유
1051	성화전기	이재현	송파구가락동 404-50	면허실효 (’88.12.31)	전기공사업법	제 30 조 3 항
<p>◎서울특별시공고제 17 호</p> <p>제 2 종 전기공사업면허영업정지</p> <p>국세징수법 제 7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 제 2 종 전기공사업체에 대</p>		<p>하여 영업정지 처분하고 전기공사업법 제 42 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한다.</p> <p>1989. 1.</p> <p>서울특별시장</p>				
면허번호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처분사항	시	유
제 602 호	명전사	강서구동촌 1 동 654-56	이회용	영업정지 2 월 (’89.1.10-3.9)	국세채납	
<p>◎서울특별시공고제 20 호</p> <p>제 2 종 전기공사업면허영업정지</p> <p>전기공사업법 제 29 조 2 항 3 호에 의 거 아래와 같이 제 2 종 전기공사업체</p>		<p>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하였기 동법 제 42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p> <p>1989. 1.</p> <p>서울특별시장</p>				
아		태				
면허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사	유
1019	대광건설 전기공사	김영제	개포동 504	영업정지 2 월 '89.1.9-'89.3.8	전기공사업법	제 29 조 2 항 3 호

◎서울특별시공고제 21 호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공고및관계도면공합

1. 하수도법 제 6 조 (제 13 조) 의 의거 은정구청 토목 88-1 88-52호본 청하수 30350-109('88.3.11)로 설치인가한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그 설치 (개량, 신설) 가 완료되었기 하수도법 제 9 조의 규정에 의거 15 일간 일반인에게 공고 및 공람한다.
2. 관계도서는 은정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별도 통지를 생략하고 이 공고로 갈음한다.

1989. . .

서울특별시장

- 공고 및 공 람 개 요 -

1. 사용개시년월일 :
2. 배수구역 : 불광, 창능 배수구역
3. 사용개시 공공하수도의 위치 : 하수도 관망도 참조

4. 사용개시 공공하수도의 합류식, 분류식 구분 : 합류식

첨부 : 공공하수도 설치내역 1부

◎서울특별시공고제 22 호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공고및관계도면공합

1. 하수도법 제 6 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인가 토목 30350-1-29호로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된 공공하수도가 완료되었기 하수도법 제 9 조의 규정에 의거 15 일간 일반인에게 공고 및 공람합니다.
2. 관계도서는 중랑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별도 통지를 생략하고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989. 1. . .

서울특별시장

구 고 시

◎종로구고시제 2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 하여 민영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 32 조의 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89. 1.

종 로 구 청 장

- 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 2. 사업주체 : (주) 완성주택 한상열
-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규모
가. 위 치 : 서울시종로구홍지동 69-1 외 2 필지
나. 대지면적 : 5,776.73㎡
다. 건축면적 : 5,198.85㎡
라. 규 모 : 연립주택 3층 6 동 72세대
- 4. 사업시행기간
1989.1 ~ 1989.12.31

◎중구청고시제 3 호

도시계획사업 (주차장) 시행변경허가

- 1. 서울특별시 교시 제 810 호 (85.12.2) 호로 사업시행 허가된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동법시행령 5 조제 25 조에 의거 동사업 시행 변경허가하고 도시계획법 제 24 조 3 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1988.12.31

중 구 청 장

○변경고시내용

- 1. 사업시행지 : 중구래평로 1 가 60-18 외 2 필지
- 2.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 (주차장) 시행변경허가
- 3. 사업 명 칭 : 코리아나호텔주차장 신축공사
- 4. 사업 기 간
 - 변경전 : '85.12.2 ~ '88.12.31
 - 변경후 : 인가일로부터 '89.12.31
 - * 변경사유 : 주차장대지 인근건축물 안전진단과 동대지의 토질조사 및 시설계획변경 (주차타워등) 검토등으로 공사지연
 - * 기타사항 : 금회 변경전 내용과 동일

<p>◎동작구고시제 6 호</p> <p style="text-align: center;">민영주택건설사업변경승인</p> <p>1.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동작구신대방동 473-2 의 1 필지상 민영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변경승인신청을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 3 조의 5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8.12.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p>	<p>1. 사업명 민영주택 건설사업</p> <p>2. 사업주체 유천건설주 대표 김철복</p> <p>3. 사업시행지 및 규모 가) 위치: 서울특별시동작구신대방동 473 의 2, 472 의 2 나) 면적 및 규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주택종별</th> <th colspan="3">규 모</th> <th rowspan="2">대지면적</th> <th rowspan="2">건축면적</th> <th rowspan="2">건축연면적</th> <th rowspan="2">사 업 비</th> </tr> <tr> <th>총</th> <th>동</th> <th>세대</th> </tr> </thead> <tbody> <tr> <td>당초</td> <td>연립주택</td> <td>3</td> <td>2</td> <td>30</td> <td>1,545.44</td> <td>613.54</td> <td>2,382.96</td> <td>1,232,783천원</td> </tr> <tr> <td>변경</td> <td>"</td> <td>3</td> <td>2</td> <td>30</td> <td>1,545.44</td> <td>613.54</td> <td>2,382.96</td> <td>1,292,735천원</td> </tr> </tbody> </table>		구분	주택종별	규 모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사 업 비	총	동	세대	당초	연립주택	3	2	30	1,545.44	613.54	2,382.96	1,232,783천원	변경	"	3	2	30	1,545.44	613.54	2,382.96	1,292,735천원
구분	주택종별			규 모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사 업 비																	
		총	동	세대																											
당초	연립주택	3	2	30	1,545.44	613.54	2,382.96	1,232,783천원																							
변경	"	3	2	30	1,545.44	613.54	2,382.96	1,292,735천원																							
<p>4. 사업기간: '88.10.10-'89.11.25</p> <p>◎성동구고시제 7 호</p> <p style="text-align: center;">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p> <p>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45 조제 5 호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 32 조의 5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8.12.31 성 동 구 청 장</p>	<p>1. 사업명: 민영주택 건설사업</p> <p>2. 사업주체: 종로구계동 140-2 현대그림 제 3 직장주택조합 조합장 정복수</p> <p>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규모 가. 위치: 서울특별시성동구광장동 484 번지의 2 권지 나. 대지면적: 39,775.0 ㎡ 다. 대지연면적: 116,794.44 ㎡ 라. 규모 아파트 18,21 층 10 동 1,056 세대 시장 (5,440.85 ㎡) 및 수영장 기타부대부리시설</p> <p>4. 사업시행기간: 1989.1-1990.12.31</p>																														

<p>◎성동구고시제 8 호</p> <p>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p> <p>서울특별시고시제 588 호 (86.7.6) 호 및 성동구고시제 4 호 (88.11.24) 로 고시한 아래사항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제 1 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20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 계획 변경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 32 조의 5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8. 성 동 구 청 장</p>	<p>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p> <p>서울특별시고시제 588 호 (86.7.6) 호 및 성동구고시제 4 호 (88.11.24) 로 고시한 아래사항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제 1 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20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 계획 변경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 32 조의 5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8. 성 동 구 청 장</p>
---	---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1. 사업명	민영주택 건설사업	과 동
2. 사업주체	강동구 성내동 551 동부주택㈜ 이용호, 정영섭	"
3. 사업시행위치및규모		
가. 위치	성동구성수동 1 가 656-322	"
나. 대지면적	1,970.0	"
다. 용도	일반분양 연립주택	"
라. 규모	연립 3 층 2 등 36 세대	"
마. 건축연면적	3,328.32	"
4. 사업시행기간	88.7-88.12.31	88.7-89.3.31

첨부: 설계도면 (생략)

<p>◎도봉구고시제 358 호</p> <p>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p> <p>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 32 조의 5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8.12.31 도 봉 구 청 장</p>	<p>1. 사업명: 민영주택건설사업</p> <p>2. 사업주체: 금호그룹리조트 주택조합 조합장 송재선의 7 개조합</p> <p>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규모</p> <p>가. 위치: 서울특별시도봉구쌍문동산 68 번지의 5 필지</p> <p>나. 대지면적: 16,004.44㎡</p> <p>다. 건축연면적: 36,838.99㎡</p> <p>라. 규모: 아파트 15 층 5 동 375 세대 (상가 2 층 1 동 및 부대복리시설)</p> <p>마. 사업시행기간: 1989.1-1990.4</p>
---	--

4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기	점	속	점	비고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연장(m)						
기정	소로	2	1	8	130	쌍문동산 69-1	쌍문동산 69-3				
변경	"	2	1	8	130	"	"			일부폐지	
기정	"	2	2	8	130	쌍문동산 66-1	"				
변경	"	2	2	8	130	"	"			폐지	
신설	"	2	3	8	210	쌍문동산 62	쌍문동산 239-1				
신설	"	2	4	8	25	쌍문동산 69-2	쌍문동산 69-2				

◎노원구고시제 374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주택건설촉진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 하고 동법시행령 제 32조의 5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8. 12. 28
노 원 구 청 장

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종로구인의동 112-2
해운항만청 직장주택조합
대표 이재완의 8개조합
3. 사업시행위치 및 면적규모
가. 위치 : 도봉구 83-2, 83
나. 대지면적 : 13,886.70㎡
다. 건축연면적 : 31,263.89㎡
라. 규모 : 아파트 12-15층
3동, 268세대
(부대시설 : 노인정 및 판매 시설)
- 마. 사업시행기간 : '88.12-'90.6

◎노원구고시제 378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주택건설촉진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 하고 동법시행령 제 32조의 5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8. 12. 30
노 원 구 청 장

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서초구잠원동 46-3
취진영대표 안전중의 11개조합
3. 사업시행위치 및 면적규모
가. 위치 : 중계동 485외
(중계택지개발사업지구내)
나. 대지면적 : 27,967.0㎡
다. 건축연면적 : 76,623.76㎡
라. 규모 : 아파트 14-15층 6동
742세대
(부대시설 : 노인정 및 판매동 판매시설)
- 마. 사업시행기간 : '88.12-'90.3

구 공 고



◎중랑구공고제 89-2 호

관 인 폐 기 공 고

중랑구중화 2 동 민원분소가 행정구역 경계조정(대통령령제 12557:88.12.21)으로, 88.12.31자 폐소되어 사용하던 관인파 제인을 중랑구 관인규칙 제 6 조(폐기:기관외 폐지) 및 동 제 8 조(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89.1.4
중 랑 구 청 장

폐 기 관 인

인		
영		
공인명	중화계 2 동장인민원분소 (민원사무용)	중화계 2 동계인민원분소 (민원사무용)

◎도봉구공고제 4 호

도시계획사업(시행)시행허가예따른공람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711번지 도시계획시설(시장)에 대한 사업시행허가를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 27 조의 2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산업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동 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989.1.14
도 봉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711번지
 나. 사업의종류: 도시계획사업(시장)
 다. 사업규모
 1) 대지면적: 3,158㎡
 2) 건축면적: 1,539㎡
 3) 연 면 적: 13,147㎡
 (지하 2 층 지상 5 층)
 라. 사업시행자: 도봉구쌍문동 711번지

<p>제일종합시장 대표 김준환 마. 사업시행기간(예정): '89.2.10 -'89.12.10 바. 공람기간: '89.1.14-'89.1.28 (14 일간)</p> <p>◎관악구공고제 4 호</p> <p>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기준에관한세부지침</p> <p>액화석유 가스의 안전 및 사업 판</p>	<p>리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동법시 행령 제3조2항”의 규정에 의거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지침을 별첨과 같이 고시 한다.</p> <p>1989.1.11</p> <p>관 악 구 청 장</p> <p>액화석유 가스판매사업 허가기준</p>	
<p>구 분</p>	<p>서울시고시제 791 호 (84.12.27)</p>	<p>허가 기준 세부 지침</p>
<p>액화 석유가스 판매사업</p>	<p>1. 학교보건법 소방법, 건 축법등 기타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할것 2. 도심반경 5km이내 지 역이 아닐것 3. 가스판매소 간직선거리 500m이상 유지할 것</p>	<p>1. 학교보건법, 소방법, 건축법 등 기타 관련법규에 저촉되 지 아니할 것 2. 도심반경 5km이내의 지역 이 아닐것 3. 가스판매소 간직선거리 500 m이상 유지할것 - 세부지침 - 가. 가스판매소 간직선거리는 저장창고와 저장창고간 최단 거리로 한다. 나. 반경 500m이내 지역을 사업권으로 보아 동사업권 역이 다음과호의 기준의 기</p>

구 분	서울시고시제 791 호 (84.12.27)	허가 기준 세부 지침
	<p>4. 판매시설은 건축법상 점도, 창고 또는 근린생활시설로서 용기보관실 총면적이 15㎡ 이상이어야 하며 관리사무실은 5㎡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p> <p>5. 1종보호 시설내 설치하지 아니함것</p>	<p>준이 적합하여야 한다. (신규허가에 한함) (1) 공년, 임야, 개발제한구역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사업권역 면적의 1/2 이상일것 (2) 사업권역이 기존업소와 중복될 경우 중복지역을 제외한 면적이 1/2 이상일것 (3) 공원, 임야, 개발제한구역 면적과 기존업소의 중복되는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사업권역 면적의 1/2 이상일것</p> <p>4. 판매시설은 건축법상 점도 창고 또는 근린생활시설로서 용기보관실로서 용기보관실 총면적이 15㎡ 이상 이어야 하며, 관리사무실은 5㎡ 확보하여야 한다. 가. 용기보관실은 건물의 1층에 한한다. 나. 용기보관실과 관리사무실은 구분설치가 가능하나 그 거리는 20 m 이상 떨어져질수 없다.</p> <p>5. 1종 보호시설내 설치하지 아니함것</p>

- 부칙: 1. 본 지침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2. 본지침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허가는 본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동대문구공고제 88-78 호

주택자재 생산업 등록취소

동법시행령 제 40조에 의거 아래과 주택자재 생산업소에 대하여 등록취소 하있기 공고합니다.

1988. 12. 동대문구청장

1. 주택건설촉진법 제 41조의2 및

등록번호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취소일자	등록취소사유	비고
184	알미늄샷슈 철재장호 스켈	조광샷슈 공업사	조원득	동대문구 답십리동 2-12	'88.12.30	가진제업	

◎은평구공고제 184 호

역촌구역 (2 차)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우리구관내 역촌구역 (2 차) 주택
개량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지적

법제 24 조 단서 규정에 의거 아래과 같이 증진 지적공부 (토지 (임야) 대장 및 지적 (임야) 도) 제책과 동시 신조 된 지적공부를 시행코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아 래

중 전 토 지 (제 책)			확 정 토 지 (신 조 된 지 적 공 부)			비 고	
토지소재	지번수	면 적	토지소재	지번수	면 적	축척 1/500	
역촌동	24	12,578.6㎡	역촌동	48	13,239.6㎡	증 661㎡	

1. 공람기간: '88.12.30-'89.1.13 (15 일 간)
2. 공고문 열람장소: 각구청지적과
3. 지적공부 열람장소: 은평구청 지 적 과 (350-1495~8 까지)
4. 재개발사업 지구세가 일부 지적 공부 등록사항이 정정되었기 인접토 지소유자는 필요 공람하시기 바라며,

5. 지적공부시행에 따른 상세한 내용은 은평구청 지적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위 기간내 이의 신청하시 기 바라며, 공람기간내 이의가 없을시는 공고내용과 같이 지적공부 확정시행 됩 니다.

은 평 구 청 장

사업소 고시

◎ **한강관리사업소고시제 1 호**

하천계속점용허가

하천법 제 25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

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의 계속점용 허가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 22 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89년 1월 6일

한강관리사업소장

허가 년월일	위 치	지목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허가받은자	
						주 소	성 명
1989. 1. 6 -	영등포구여의도동 85-1 및 송파구잠실동 19 번지선 (한강)	하천	1,932(여 의도1,142.4 잠실 739.6)㎡	유선장 설치	1989. 1. 6 ~ 1989.9.10	인천시남구 만수동 산 1-2	허 월 광 대표이사 류 복 수

◎ **한강관리사업소고시제 2 호**

하천계속점용허가

하천법 제 25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

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의 계속점용

허가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 22 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89년 1월 11일

한강관리사업소장

허가 년월일	위 치	지목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허가받은자	
						주 소	성 명
1989. 1. 11. -	서울특별시성동 구 광장동 177 번 지선 (한강)	하천	413.28 ㎡	수상법당 및 부속 바지선 설치	'89.1.13. ~ '90.1.13.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장동 172 번지	대한불교방어 법회 회장 이 전 호

사업소 공고

◎ **목동지구개발사업소공고제1 호**

회계관계공무원직인등록및채기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직인등록 및 채기 신고하고 동
규칙 제11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1988. 12.31.

목동지구개발사업소장

- 1. 사용개시일자 : 1989. 1. 1
- 2. 채 기 일 자 : 1989. 3. 1

3. 사용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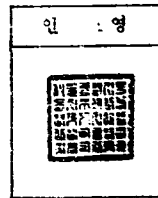
- 1) 서울특별시 목동지구개발사업소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 경리관
- 2) 서울특별시 목동지구개발사업소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 본임경리관
- 3) 서울특별시 목동지구개발사업소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 지출원





4. 채기직인

- 1) 서울특별시 목동, 신정동개발사업비
특별회계 경리관
- 2) 서울특별시 목동, 신정동개발사업비
특별회계 본임경리관
- 3) 서울특별시 목동, 신정동개발사업비
특별회계 지출원

직 인 통 례 조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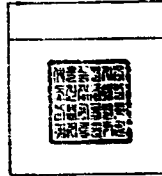
회 계 명 목 별 회 계
관 서 명 (구, 청, 소) 서울특별시목동지구개발사업소
직 명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경리관
사용개시일 1989. 1. 1



<p style="text-align: center;"><u>직 인 등 록 조 서</u></p> <p>회 계 명 특 별 회 계 관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목동지구개발사업소 직 명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분임경리관 사용개시일 1989.1.1</p>	<p style="text-align: center;">인 영</p> 
<p style="text-align: center;"><u>직 인 등 록 조 서</u></p> <p>회 계 명 특 별 회 계 관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목동지구개발사업소 직 명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지출원 사용개시일 1989.1.1</p>	<p style="text-align: center;">인 영</p> 
<p style="text-align: center;"><u>직 인 폐 기 신 고 서</u></p> <p>회 계 명 특 별 회 계 관 서 명 서울특별시목동지구개발사업소 직 명 서울특별시목동. 신정동 개발사업비특별회계 경리관 사용기간 1988년 10월 일부터 1989년 2월 28일 까지</p>	<p style="text-align: center;">인 영</p> 
<p style="text-align: center;"><u>직 인 폐 기 신 고 서</u></p> <p>회 계 명 특 별 회 계 관 서 명 서울특별시목동지구개발사업소 직 명 서울특별시목동. 신정동 개발사업비특별회계 분임경리관 사용기간 1988년 10월 일부터 1989년 2월 28일 까지</p>	<p style="text-align: center;">인 영</p> 

직 인 폐 기 신 고 서

회 계 명 특 별 회 계
 관 서 명 서울특별시 육동지구개발사업소
 직 명 서울특별시 육동 신정동 개발사업비특별회계지출권
 사용 기간 1988년 10월 일부터 1989년 2월 28일까지



사 령

인 사 발령 통 지

령 제 1호

총무처	우성국	후생기획과	유	동	조
		행정사무관			
서울특별시	근무를	명함.			
내무국	근무		89.1.1	대	동
				령	
					서울특별시
					장
상공부			이	규	권
		행정사무관			
서울특별시	근무를	명함.			
내무국	근무		89.1.1	대	동
				령	
					서울특별시
					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총괄과		성	기	복
	행정사무관				
서울특별시	근무를	명함.			
내무국	근무		89.1.1	대	동
				령	
					서울특별시
					장

서울특별시
지방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에 임함.
총무처 근무를 명함.

조 정 제
89.1.1 대 통 령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발과
지방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에 임함.
국토통일원 근무를 명함.

이 재 환
89.1.1 대 통 령

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 투자관리담당관실
지방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에 임함.
상공부 근무를 명함.

조 석
89.1.1 대 통 령

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 심사분석담당관실
지방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에 임함.
상공부 근무를 명함.

김 성 인
89.1.1 대 통 령

인 사 발 령 통 지 령 제 2 호

서울특별시 산업경제국장
이사관
서울특별시 재무국장에 보함.

신 성 호
88.12.27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이사관 서울특별시 산업경제국장에 보함.	진 명 호 88.12.2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이사관 서울특별시 교통국장에 보함.	이 원 종 88.12.27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이사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 보함.	김 문 종 88.12.27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이사관 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 근무를 명함.	최 상 근 88.12.27
서울특별시 내무국 지방시설기감 시설기감에 임함.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 근무를 명함.	우 명 규 88.12.27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구청장 지방부이사관 부이사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에 보함.	권 이 중 88.12.27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구청장 지방부이사관 부이사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에 보함.		박 형 천	88.12.27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방부이사관 부이사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에 보함.		김 원 오	88.12.27
서울특별시 폐무국장 이사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박 순 철	88.12.27
서울특별시 교통국장 이사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이 원 백	88.12.27
		대 동 령	
◎ 1989년 1월 1일 4 급 공무원 파견			령 제 3호
성 명	발령 사항	원부서	직 급
박인용	국무총리비서실파견 (치안 종합대책반요원) ('89.1.1-'89.2.28)	내무국	지방서기관
◎ 1989년 1월 5일 4 급 이하 공무원 파견			령 제 4호
성 명	발령 사항	원부서	직 급
김재중	종합민원실 (시민불편신고센터) 파견 ('89.1.5 - 별도지시시까지)	내 무 국	지 방 서 기 관

제 1429 호

시

보 1989.1.14

65-55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이상설	종합민원실 (시민불원신고센터) 파견 ('89.1.5 - 별도지시시까지)	노원구	지방행정사무관
이용대	"	도봉구	"
박원규	"	목동지구개발사	지방건축기사
진정근	"	동부건설사업소	지방행정주사보
차용준	"	종합운동장관리(사)	"
김종근	"	동작구	"
이병창	"	목동지구개발사	지방토목기사보
조은영	"	총무과	지방타자원

◎1989년 1월 6일 4급공무원파견 명 제 5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김한양	국무총리비서실파견 (수도권대책실무기획단 교통대책반 요원) ('89.1.6-90.1.5)	내무국	지방서기관

3급공무원전도 명 제 6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조삼섭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용산구부구청장	지방부이사관
윤태경	용산구부구청장	내무국	"

'89 국방대학원 교육파견 명 제 7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이원택	국방대학원 교육파견 ('89.1.7-90.1.6)	내무국	지방이사관
이종철	" (")	"	지방시설부기감

◎1989년 1월 10일 6급기술직공무원파견 명 제 8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정한택	서초구파견 ('89.1.10-'89.12.31)	종합건설본부	지방건축기사

㉔ 1989년 1월 10일				6 급 이하 공무원 파견			령 제 9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이국한	주택기획과 (도시개발공사창설반) 파견 ('89.1.10- 별도지시시까지)			옥동지구개발 사업소	지방기계기사보			
이동진	"			"	지방전기기사보			
고승순	"			공무원교육원	지방운전원			
기능직 공무원 파견 해제				령 제 10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김영덕	총무과 파견 해제			강 서 구	지방운전원 (기능 10 등급)			
5 급 기술직 공무원 전보				령 제 11 호				
성 명	발령부서	발령직위	발령직급	현부서	직 위	직 급		
전상훈	서대문구		지방건축기과	서울특별시	중앙기상대 전입	지방건축기과		
김영결	기술심사 담당관	심사총괄 계 장	지방토목기과	기술심사 담당관	토목심사제과	지방토목기과		
이종일	관악구		"	내무국	올림픽조직 (위)과전	"		
강원도				인 사 발 령 종 지				령 제 13 호
부이사관				윤 태 경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1988.12.30 대 통 령				
내무국 근무를 명함.				1988.12.30.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 심사분석담당관				유 동 주				
서기관				유 동 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1988.12.30 대 통 령				

서울특별시 강동구 증무국장 서기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진출을 명함.				박 한 경 1988.12.30. 대 통 령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도로과장 시설기정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진출을 명함.				최 주 하 1988.12.30. 대 통 령			
1989년 1월 10일				8 급 공무원 진출		명 계 14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임대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출을 명함.			보라매공원 관리사무소	지방행정서기		
이재영	"			중 구	"		
6 급 공무원 징계 및 5 급 공무원 경고				명 계 15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임동열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제 2 호 에 의하여 "징계"에 처함.			건설자재시험소	지방행정주사		
공우홍	불문 (경고)			무동지구개발사업소 임대제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별정직 6 급 상당 공무원 신규 임용				명 계 16 호			
성 명	발령부서	발령직위 (호봉)	발령 직 급	현 부 서	직 급		
이종섭	총 무 과	비서 (2호봉)	지방별정직 6 급 상당	신	규		
인 사 활 령 통 지				명 계 18 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신설국장 지방시설기정 시설기정에 임함.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도로과장 직무대리에 명함.				최 경 준 1989.1.7 대 통 령			

65-58 계 1429 호 시

보 1989.1.14

◎ 1989년 1월 11일		6 급이하기술직공무원면직		령 제 19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강철일 한인수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	재개발과 "	지방건축기사 지방건축기사		
인 사 발 령 통 지				령 제 534 호	
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 이사관 관리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장에 보함.		최 상 준	88.12.30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시설기장 관리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장에 보함.		우 영 규	88.12.30	대 통 령	
◎ 1989년 1월 12일		4 급이하공무원과견및파견해제		령 제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이윤복	업무과 (수도공사설립추진요원) 과견 ('89.1.12-'89.3.31)	내무국	지방서기관		
손시익	종합민원실 (시민불편신고센터요원) 과견 ('89.1.12 - 별도지시시까지)	강남구	지방행정사무관		
이용대	종합민원실 (시민불편신고센터요원) 과견 해제	도봉구	"		
◎ 1988년 12월 31일		3 급 공 무 원 전 보		령 제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왕철민 이경배	울림피기획관 도봉구부구청장	내 무 국 "	지방부이사관 "		

성 명	발 명 사 랑	현 부 서	직 급
김병용	노원구부구청장	내 무 국	지방부이사관
손장호	마포구 "	"	"
유래봉	영등포구부구청장	"	"
도명정	내무국	올림픽기획관	"
박종욱	"	영등포부구청장	"
허 관	"	노원구부구청장	"
안식환	내무국 (도시개발공사파견)	내 무 국	"
장기찬	" (")	"	지방시 설부기감
유동주	전자계산소장직무대리	심사분석담당관	서 기 관
박한경	내무국	강동구청무국장	"
최주하	한강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도로과장	시설거정
이종철	내무국	한강관리사업소장	지방시 설부기감
강응원	도봉구	노 원 구	지방토목기원보
김수만	"	"	지방조사원
박방주	"	"	"
백태기	"	"	"
송시영	"	"	"
김진희	"	"	지방사환
안중섭	"	"	지방행정주사보
오석태	"	"	지방행정서기
이재근	"	"	"
김순호	"	"	"
이상택	"	"	"
한승아	"	"	지방행정서기보
박송규	"	"	"
이선환	"	"	"
임혜자	"	"	"
안찬영	"	"	"
구본성	"	"	"

65-60 제 1429 호 시

보 1989.1.14

성 명	발 명 사 항	현 부 서	직 급
김명진	도 분 구	노 원 구	지방행정서기보
기성호	"	"	"
이상구	"	"	"
김선주	"	"	"
이은주	"	"	"
신태현	"	"	지방행정서기보 시보
김기수	"	"	"
박성준	"	"	"
이상호	"	"	지방토목기원보
우삼종	"	"	지방조사원
신기학	"	"	"
박민용	"	"	"
김경순	"	"	지방사환
정영자	"	"	지방별정직 7급상당

© 1989년 1월 1일

6 급 이하 공무원 전보

령 제 535 호

성 명	발 명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정강인	도 분 구	노 원 구	지방행정주사
정재룡	"	"	지방행정주사보
김진수	"	"	지방행정서기
곽영화	"	"	"
도재환	"	"	지방행정서기보
전승열	"	"	"
신동산	"	"	"
이영미	"	"	"
김병찬	"	"	"
노정환	"	"	"

성 명	발 명 사 항	원 부 서	직 급
이유미	도 봉 구	노 원 구	지방행정서기보
고경석	"	"	"
조한배	"	"	"
백경만	"	"	"
석채승	"	"	"
황영미	"	"	"
이우영	"	"	"
이승규	"	"	"
박득원	"	"	지방행정서기보시보
이재근	"	"	지방행정주사
전인승	"	"	지방행정주사보
임재섭	"	"	지방행정서기
송기호	"	"	"
김선호	"	"	지방행정서기보
은미화	"	"	"
이승연	"	"	"
송도치	"	"	"
최광록	"	"	"
홍순관	"	"	"
문영경	"	"	"
김정수	"	"	"
고운경	"	"	"
안병열	"	"	"
박우영	"	"	"
정병조	"	"	"
김용용	"	"	지방토목기원보
권해규	"	"	지방조사원
이영일	"	"	"
시상기	"	"	"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장주현	도봉구	노원구	지방조사원
박세정	"	"	지방사환
이상설	"	"	지방행정주사
박상남	"	"	지방행정서기
이상훈	"	"	"
유경애	"	"	지방행정서기보
김영훈	"	"	"
김명숙	"	"	"
신범수	"	"	"
기익선	"	"	"
이묘현	"	"	"
한희균	"	"	"
양미영	"	"	"
오관홍	"	"	"
이상영	"	"	"
유명환	"	"	"
김진호	"	"	"
임창우	"	"	지방토목기원보
지종일	"	"	지방조사원
서정자	"	"	"
황재린	"	"	"
어경순	"	"	지방사환
인철식	"	"	지방행정주사
양춘근	"	"	지방행정주사보
유남욱	"	"	지방행정서기
임재봉	"	"	"
김윤재	"	"	지방행정서기보
박명환	"	"	"
정동권	"	"	"

성 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 급
지영미	도 봉 구	노 원 구	지방행정서기보
손배을	"	"	"
김증걸	"	"	"
전백정	"	"	"
신재필	"	"	"
백성운	"	"	"
박상순	"	"	지방행정서기보시보
이영자	"	"	"
성기두	"	"	지방토목기원보
박광수	"	"	지방조사원
노용파	"	"	"
김봉경	"	"	"
정선아	"	"	지방사환
김정상	강 남 구	서 초 구	지방행정주사
양재륙	"	"	지방행정주사보
조의현	"	"	"
채문원	"	"	지방행정서기
이문규	"	"	"
안용성	"	"	"
김용배	"	"	"
박 경	"	"	지방행정서기보
김현자	"	"	"
김태진	"	"	"
장석근	"	"	"
지영애	"	"	"
이호경	"	"	"
박일운	"	"	"
김한규	"	"	"
김선애	"	"	"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최희성	강 남 구	서 초 구	지방조사원
허원행	"	"	"
유항열	"	"	"
이은숙	"	"	지방사환
장재주	"	"	지방행정주사
안근섭	"	"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식	"	"	"
장세택	"	"	지방행정서기
이영웅	"	"	"
허필환	"	"	"
윤충모	"	"	"
서연석	"	"	지방행정서기보
김영호	"	"	"
한정환	"	"	"
손동화	"	"	"
김명기	"	"	"
권성호	"	"	"
주남열	"	"	"
나범정	"	"	"
이연구	"	"	지방조사원
서대섭	"	"	"
하순석	"	"	"
지근희	"	"	지방사환
강희주	동 대 문 구	증 랑 구	지방조사원

◎ 1989년 1월 1일 부처간인사교류 (5급이하) 전출입발령 병 제 536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손성호	서울특별시 전일운 명함. 내무국 근무를 명함.	내무부 경기도	지방행정사무원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장상문	서울특별시 전입출 명함. 내무부 근무됨 명함.	내무부 경상남도	지방행정사무관		
한인수	"	내무부 경상북도	지방행정주사		
김장건	" 지방행정주사보	내무부 경상남도	"		
유길준	"	"	"		
신용혁	"	내무부 광주사	지방행정주사보		
정순구	"	내무부 경상남도	지방보육기사보		
안시용	문교부 전출출 명함.	영등포구	지방행정주사		
황정모	경제기획원 전출출 명함.	시정개발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이우우	내무부 전출출 명함.	용산구	"		
유인모	문교부 전출출 명함.	충안구	"		
홍세광	내무부 전출출 명함.	영등포구	지방보육기사보		
지방전문직공무원임용 (재계약)					
성명	성별	연령	채용구분	실보수	계약기간
임성춘	여	30	전입다호	전문직공무원 보수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하면 지급	89.1.10-92.1.10
<p>○ 국제기술협력 규정에 의거 U.N.D.P가속위성사업 해외훈련대상자로 아래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외훈련 파견을 명함.</p> <p style="text-align: center;">단기 해외훈련 파견명령</p>					
훈련과정	훈련기간	훈련과제국	훈련대상자	훈련비용	
가속위성 연구훈련	'89.1.22 - 2.14 (24일간)	미국	보건위생과, 지방수의사 이양수 (42세)	국제기술협력규정에 의한 U.N.D.P 자금	
서울특별시장					